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보다나은 정부

2019년 2월 2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26.(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2. 26.(화)	담당부서	유통물류과
담당과장	서기웅 과장(044-203-4380)	담 당 자	조은형 사무관(044-203-4381)

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상권영향평가 내실화로 주변상권 보호 강화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는 2.27.자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9.2.27(수)~4.8(월), 40일간)했다.

○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대표성을 강화**하며, 법령 규정이 모호하여 **반복적 해석 질의가 있었던 내용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권영향평가)** (i)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분석 범위 중 "소매점(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입점이 예정된 모든 주요 업종"**으로 변경함.

* (기존) 기존 사업자 중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제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규정
(개정) 기존 사업자 중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동일 업종 기존사업자(입점예정 주요업종과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규정

- (ii) **영향 분석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여,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고,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에 대해 **점포수·매출·고용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분석**하도록 개선함.

* (기존)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종합적·객관적으로 작성하도록만 규정하였으며, 구체적 평가 기준 등은 부재

- (iii) 기존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간에 명시적 연계가 없었으나, **상권영향평가 결과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지역협력을 통해 완화**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음.

②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대형유통·중소유통기업 대표를 각각 1인씩 추가하여 협의회를 총 **9인→11인 규모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함.

③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 대규모점포 내에 새로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도 **별도의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점포 관리대장에 부기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

□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상권영향평가의 **분석 대상 업종 중 소매업이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제한**되어 **평가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 **작성 방법**도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서가 주관적으로 작성**되는 등, **상권영향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라고 말하고,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지역협력계획의 내용도 충실**해져,

○ **상권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 **산업부**는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그 이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붙 임】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조은형 사무관(☎ 044-203-43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① 상권영향평가 작성대상 확대 및 작성방법 보완 (제5조제1항, 별표1)

○ **(분석대상 확대)** 소매업 분석대상을 **「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에서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표준산업분류기준)으로 **확대**

현 행	개정안
ㅇ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	ㅇ 가구소매업(4752), 한식음식점업(5611) 등, **입점 예정 주요 업종**과 표준산업분류 세분류(4자리 단위)가 동일한 업종* 분석

* 분석 범위 확대로 인한 부담을 감안하여 총 매장면적의 1/10 이상 또는 1,000㎡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으로 제한

○ **(분석방법 보완) 정량적·정성적 조사방법을 병행**하고,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에 대해 **점포수·매출·고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현 행	개정안
ㅇ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 기술	ㅇ ①**조사방법**(매출액·카드데이터 분석 등 정량적 분석 및 설문조사 등 정성적 방법 병행), ②**분석 항목**(점포수·매출액·유동인구 등), ③**시간적 범위**(영업개시 이후 3년간) **구체화**
※ 지역협력계획과 연계 규정 부재	ㅇ상권영향평가 결과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협력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

②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 강화 및 구성 개선 (제4조의2)

○ **대형·중소유통 구성원**을 늘려 **유통 균형발전 관련 의견형성·협의 역할을 강화**하고, **소비자·주민대표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

현 행	개정안
ㅇ **(위원수) 9명** - 지자체 공무원(2) - 대형유통대표(2) - 중소유통대표(2), - 소비자·주민 또는 유통전문가 또는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민(3)	ㅇ **(위원수) 11명** - 지자체 공무원(2) - 대형유통대표**(3)** - 중소유통대표**(3)** - 소비자·주민대표**(2)** - 기타 유통산업전문가 또는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민(1)

③ 대규모점포內 준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절차 정비 (제5조, 제6조의2)

현 행	개정안
ㅇ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대규모 점포 內 준대규모점포 개설**의 경우, **등록 필요 여부가 불분명**	ㅇ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명확히 하고, 기존에 개설된 **대규모점포 등록대장에 부기 등록**

④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등

㉠ (개설계획 변경 예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개설예고 수정 신청** 및 **지자체의 수정 게재**가 가능하도록 절차 정비

* 개설계획 내용(개설자, 소재지, 영업개시일, 점포의 종류, 매장면적)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 변경 예고하도록 규정

㉡ (변경등록 대상)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주소변경**과 **대규모점포 소재지 변경**을 별도 호로 분리하여, 각각이 **변경등록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변경등록 의무자) 대규모점포등이 분양된 경우 개설자는 더 이상 관리권한이 없으므로, **관리자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

㉣ (일몰규정) 일몰 도래시마다 **규제 존속 여부를 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제' 대상 규제 중, **규제존속(일몰해제)·일몰변경(2년→5년)** 사항 반영

* '18.8월 국조실 및 산업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붙 임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48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점포 등록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대상이 좁고 분석 방법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기초 지자체 내 원활한 갈등조정과 상생협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 강화와 그 위원 구성을 개선하는 한편, 반복적 법령 질의가 발생하였던 규정을 정비하고 민원 사무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권영향평가서 작성대상 확대 및 작성방법 보완(제5조제1항, 별표 1)

대규모점포 등록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대상이 좁고 분석 방법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상권영향평가서의 기존 사업자 영향평가 대상 중 소매점('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을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확대하고, 정량적·정성적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에 대해 점포수·매출·고용 등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함.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 강화 및 구성 개선(제4조의2)

기초 지자체 내 원활한 갈등조정과 상생협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 강화와 그 위원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협의회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수를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주민대표를 필수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개선함.

다.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의 관리 절차 정비(제5조, 제6조의2)

준대규모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등록된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하는 경우에도 개설등록이 필요하나, 등록을 수리하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등록된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하는 준대규모점포가 개설등록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관리대장에 준대규모점포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부기·관리하고, 해당 준대규모점포가 휴업·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치하도록 함.

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변경 예고 절차 신설 등(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시 개설자, 개설지역,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 종류, 매장면적 등 개설계획을 영업 개시 전에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하여야 하나, 게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정하여 예고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변경예고 절차를 신설함.

마.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등 (제5조제4항, 제5조제5항, 제5조제7항제5호,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27조제2항)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 사항,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주체,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고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재검토형 규제 중 3건에 대해 일몰을 해제하고 2건에 대해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으며, 민원사무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항에 건축

물 건축·용도 변경 허가서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삭제 조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전자우편 : melodical@korea.kr
- 팩스 : 044-203-4737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개설 또는”을 “개설된 또는”으로, 같은 호 및 제2호 중 “2명”을 각각 “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지역의 소비자 또는 주민 단체의 대표 2명

제4조의2제2항제4호(종전의 제3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해촉(解囑)”을 “위원에 대한 지명 또는 위촉을 철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4조의3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제4조의3제5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사업의 개요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라. 상권의 특성

제5조제1항제2호마목 중 “현황 분석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현황 및 종합적”을 “현황”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상권영향기술서(상권에 미치는 영향,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포함)

제5조제1항제2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의 명칭,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 개인 또는 법인의 주소

제5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점포의 소재지·상호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제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규모점포 내에 위치한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 내에 준대규모점포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5조제7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의2”를 “법 제8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계획을 예고한 후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계획을 수정하여 게재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게재”를 “수

정하여 게재”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를 “법인, 조합, 자치관리단체 또는 법 제12조제2항 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명칭, 성명(개인 또는 대표자), 주소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를 “기록·관리하되, 대규모점포 내에 위치한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 후단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기사항증명서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을 “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을”로, “인감증명서의”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 서류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류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서류”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판매관리사자격증”을 각각 “유통관리사자격증”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을 “5년마다(매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및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9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신설 2013.7.22>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항 목		작성 기준 및 방법
1. 요약문	가. 상권의 특성 나. 상권의 경쟁 상황 다. 상권 및 기존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 상권의 특징, 기존 사업자 현황, 상권영향 기술서를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작성
2. 사업의 개요	가. 개설자 나. 개설지역 다.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 예정일 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마. 매장면적(㎡) 바. 예상 주요 입점업종	• 라목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구분하고, 대규모점포인 경우 법 별표의 대규모점포의 종류 6가지(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중에서 선택 • 바목은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예상 주요 영업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 단위) 기준으로 작성 – 예상 주요 입점업종은 대규모점포의 경우 총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거나, 매장면적이 1,000㎡ 이상인 모든 업종(대형종합소매업(4711) 제외)을 작성 –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47121) 또는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으로 작성
3. 상권영향 분석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나. 위치도 또는 지형도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 가목의 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함 – 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3km – 매장면적 330㎡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500m – 매장면적 330㎡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300m • 나목의 지도에 개설예정지와 상권영향분석의 공간적 범위를 표시 • 나목의 지도에 다목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표시
4. 상권의 특징	가. 입지지역의 특징 나. 주거인구수 다. 주거인구 소득분포 라. 유동인구 마. 인구 전출입	• 가목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전통상업보존구역, 교외지역, 신도시, 역세권으로 구분하여 작성 •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및 상권정보시스템(http://sg.seda.or.kr) 등을 참고하여 작성 • 마목은 서울의 경우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지방의 경우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등을 참고하여 작성 • 바목은 지하철역 · 버스정류장 · 철도역 개수 등을 작성 • 사목은 관광 · 여가 · 오락, 교통 · 운송, 생활 · 개인서비스, 소매 · 유통, 숙박, 스포츠 시설 개수 등을 작성
5.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가. 동일업종 현황 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현황 다.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및 상점가 현황 라. 상권 내 경쟁 현황	• 가목은 상권 내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예상 주요 영업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 단위)가 동일한 업종 현황을 작성 • 나목은 상권 내 점포 수를 기술하되, 대규모점포는 법 별표의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따른 6가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점포수를 작성하고, 해당 대규모점포등과 주요 영업 업종(세분류) 비교 • 다목은 상권 내 시장 및 상점가별 점포수, 주요 영업 업종, 특이사항 등을 작성하고, 해당 대규모점포등과 주요 영업 업종(세분류)을 비교 • 라목은 가목에서 다목까지 내용을 종합하여 상권 내 기존 사업자간 경쟁상황을 기술하고, 위치도 또는 지형도에 표시
6. 상권영향 기술서	가. 상권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범위 (2) 분석항목 (3) 분석방법 (4) 예측결과 (5) 평가 (6) 지역협력계획서 반영사항	• (1)은 영업개시 이후 3년간 상권 전체, 상권 내 동일업종을 기준으로 작성 • (2)는 상권의 전반적인 변화(점포수, 매출액, 유동인구, 업종 및 영업형태, 임대료, 고용), 상권 내 동일업종 변화(점포수, 매출액, 고용)를 작성 – 필요시, 상권 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분석 추가 • (3)은 2개 이상의 타지역 유사상권 사례분석 등 정량적 방법과 기존 사업자 설문조사, 현지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정성적 방법을 병행하고, 타지역 유사상권 선정 이유, 자료 출처, 설문조사 항목 등 분석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 (4)는 예측된 내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알기 쉽게 기술 • (5)는 (4)를 바탕으로 상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정량적 수치를 포함하여 종합적·객관적으로 작성 • (6)은 (4)와 (5)를 바탕으로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협력 내용 작성
	나.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범위 (2) 분석항목 (3) 분석방법 (4) 예측결과 (5) 평가 (6) 지역협력계획서 반영사항	• (1)은 영업개시 이후 3년간 상권 내 고용을 대상으로 작성 • (2)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고용 창출(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및 지역주민으로 구분), 동일업종 고용 변화, 그 밖의 업종 고용 변화를 작성 • (3)은 산업연관분석(상권 매출액 증감률 및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하여 분석) 또는 2개 이상의 타지역 유사상권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고용변화 분석 • (4)는 예측된 내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알기 쉽게 기술 • (5)는 (4)를 바탕으로 지역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정량적 수치를 포함하여 종합적·객관적으로 작성 • (6)은 (4)와 (5)를 바탕으로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 내용 작성

비고: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수치와 평가내용 등은 출처와 산출·평가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8항제11항 중 “대표자 성명”을 “성명(대표자, 개인)”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준)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신고”를 “대규모점포등관리자(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개인”을 “개설자가 개인”으로 하고, 같은 작성방법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개인인 경우 ⑨, ⑩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령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 11명 ----------.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② ----------.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1. ---------- 개설된 또는 ---------- 3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 3명
<신 설>	3. 해당 지역의 소비자 또는 주민 단체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삭 제>
나·다. (생 략)	가·나. (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④ ---------- 위원에 대한 지명 또는 위촉을 철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 ④ (생 략)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 ---------- 지정 등------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업의 개요 :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	나. 사업의 개요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위치도 또는 지형도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라. 인구통계 현황 분석 :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 유동인구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라. 상권의 특성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마. ---------- 현황 ------ ---------- ---------- ----------
바. 상권의 특성 분석 : 상권 내 주거형태, 교통시설, 집객시설,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바. 상권영향기술서(상권에 미치는 영향,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포함)
사. 상권영향기술서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④----------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1. 법인의 명칭,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 개인 또는 법인의 주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점포의 소재지·상호
⑤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⑤---------- 자(제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를 포함한다)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⑥----------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단서 신설>	다만, 대규모점포 내에 위치한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 내에 준대규모점포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개설계획을 예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 법 제8조의3----------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계획을 예고한 후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계획을 수정하여 게재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수정하여 게재---.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①·② (생 략)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인, 조합, 자치관리단체 또는 법 제12조제2항 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명칭, 성명(개인 또는 대표자), 주소가 --.
1. 법인, 조합, 자치관리단체 또는 법 제12조제2항 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법인·조합 또는 자치관리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 및 상호	<삭 제>
2.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증감	<삭 제>
3. 업태	<삭 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6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대규모점포등등록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 ---------- ---------- ---------- ------- 기록·관리하되, 대규모점포 내에 위치한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인감증명서	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①---------- ---------- ---------- ---------- ---------- ---------- -----. ---------- ---------- ---------- ---------- ---------- ---------- -------- 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인 경우)을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 서류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권한(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 ---------- ---------- ---------- ---------- ---------- ---------- ---------- 서류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①·② (생 략)	제12조(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판매관리사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판매관리사자격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 판매관리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사진 1매를 첨부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통관리사자격증---------- ---------- 유통관리사자격증---------- ---------- 유통관리사자격증- ---------- ---------- ---------- ---------- ---------- ---------- -------.

제27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27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5년마다 (매 5년----------.
1. 제5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 개설계획의 게재내용, 신청 후 게재기한: 2015년 1월 1일	<삭 제>
2. 제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신고서, 첨부서류, 변경신고 내용,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 ---------- 2019년 1월 1일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 ---------- 2019년 1월 1일
4. 제10조의2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 통보기한 및 지정서 반납의무: 2015년 1월 1일	<삭 제>
5.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수수료: 2015년 1월 1일	<삭 제>